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나218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나2187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3가단5942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15. 9. 14.

판결 선고 2015. 10. 14.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3가단5942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서울 광진구 D 대 155m² 및 위 지상 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6가구) 1층 및 지층 각 65.75m², 2층 66.76m²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8. 1. 접수 제525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염원섭

판사조원경

판사정현식